◉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39호

2026년 5월 2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6-005호(청항선 포항해양3호 · 어선 해동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청항선 포항해양3호·어선 해동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이**(****. *. **)

경***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해동호는 2025. 9. 2. 09:27경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 구항 방사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055도, 거리 약 0.05해리 해상(북위 36도 02분 49초, 동경 129도 22분 55초)에서 포항해양3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해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입항하던 중 자선의 좌현 쪽에서 출항 중이던 포항해양3호를 보지 못하고 좌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포항해양3호가 출항 중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협력을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조종 시 ①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②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상 항행하여야 하며, ③ 포항항 구항 내 수상구역에서는 선박 최고속력(현재 8노트 이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④ 해동호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이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⑤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조업 후 입항 시에는 출항하는 선박이 있는지를 살펴 항법에 따라 각별히 주의하여 항행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